|  |  |  |
| --- | --- | --- |
|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2018]4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서와 직속기구 :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오니 확실하게 관철하여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8년 12월 13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방법  제1장 총칙   1.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으로 약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이 방법에서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라 함은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치료, 주택자금대출이자 또는 주택임차료, 노인봉양 등 6개 항목의 특별부가공제를 지칭한다. 3.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는 공평·합리, 민생에 유익, 간편·수월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4. 특별부가공제의 범위와 기준은 교육, 의료, 주택, 노인봉양 등 민생 지출의 변화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정한다.   제2장 자녀교육   1. 납세자 자녀의 전일제 학력교육과 관련된 지출은 자녀 1인당 월 1,000위안의 기준으로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학력교육은 의무교육(초등교육, 초급중등교육), 고급중등 단계의 교육(일반 고급중등교육, 중등 직업교육, 기능공 교육), 고등교육(전문대, 대학 학부, 석사 연구생, 박사 연구생 교육)을 포함한다.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취학 전 교육 단계에 있는 자녀의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부모의 선택에 따라 부모 중 한명이 공제기준의 100%를 공제하거나 두명이 각각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2.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해외 학교의 입학통지서, 유학사증 등 관련 교육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3장 계속교육   1. 납세자가 중국 내에서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은 학력(학위)교육을 이수하는 기간에 월 400위안의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동일 학력(학위) 계속교육의 공제기간은 4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을 이수함으써 발생한 지출은 관련 증서를 취득한 연도에 한해 3,600위안의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2. 개인이 대학 학부 및 그 이하의 학력(학위) 계속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이 방법에 규정된 공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선택에 의해 그의 부모 또는 본인이 공제할 수 있다. 3.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을 이수하는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서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4장 중병치료   1. 한 납세연도 내에 납세자에게 발생한 기본의료보험 관련 의약비 지출은 의료보험 정산 후의 개인부담금(의료보험 목록 범위 내의 개인지급 부분) 누계가 1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가 연말정산 시 80,000위안의 한도 내에서 실지출 금액을 공제한다. 2. 납세자의 의약비 지출은 선택에 의해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제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선택에 의해 부모 중 한명이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 및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각각 별도로 계산한다.   1.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해 의약 서비스 비용 및 의료보험 정산 관련 영수증 원본(또는 복사본) 등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보장부서는 환자에게 의료보장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환자 본인의 연간 의약비 정보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주택자금대출이자   1. 납세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상업은행 또는 주택공적금 개인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명의로 중국 내에서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출은 대출이자 실제 발생연도에 한해 월 1,000위안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하며 그 공제기간은 최장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는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 혜택을 한번만 누릴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주택 구매 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율을 적용받은 주택자금대출을 지칭한다.   1. 부부간의 약정에 의해 부부 중 한명이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있다.   부부가 혼전에 각각 별도로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자 지출은 결혼 후에 둘 중 한 주택을 선택하여 해당 주택의 구매자가 공제기준의 100%를 공제하거나 부부 쌍방이 각자가 구매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제기준의 50%를 공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제 방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1.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해 주택자금대출계약, 대출금 상환 지출 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6장 주택임차금   1.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임차금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직할시·성도(자치구 행정부 소재지)도시, 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와 국무원이 확정한 기타 도시는 월 1,500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한다. 3. 제(1)호에 나열된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로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한 도시의 경우 월 1,100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하며,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가 100만명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시의 경우 월 800위안을 공제기준으로 한다.   납세자의 배우자가 납세자의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납세자가 주요 근무도시에서 자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할구(市轄區)의 호적인구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1. 이 방법에서 주요 근무도시라 함은 납세자가 임직·피고용된 직할시, 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부성급(副省級)도시, 지급시(地級市)(지역·주(州)·맹(盟))의 행정구역 전역을 지칭하며 임직업체·고용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신청을 접수한 세무기관의 소재 도시로 한다.   부부의 주요 근무도시가 동일한 경우 부부 중 한명만이 주택임차료를 공제할 수 있다.   1. 주택임차금 지출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공제한다. 2. 납세자와 그의 배우자는 한 납세연도 내에 주택자금대출이자 및 주택임차금에 대한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없다. 3. 납세자는 검사에 대비하여 주택임차계약서·협의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7장 노인봉양   1. 납세자가 1명 및 그 이상의 피봉양인을 봉양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출은 통일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2. 납세자가 외자녀인 경우 월 2,000위안의 기준으로 고정금액을 공제한다. 3. 외자녀가 아닌 납세자의 경우 그와 그의 형제자매가 월 2,000위안의 공제한도액을 분할공제하되 각 자녀에게 할당된 공제금액이 월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봉양인에 균등할당하거나 약정한 바에 따라 할당할 수 있으며 피봉양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할당할 수도 있다. 약정할당 또는 지정할당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된 할당협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할당이 약정할당을 우선한다. 구체적인 할당방식과 할당액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할 수 없다. 4. 이 방법에서 피봉양인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 그리고 자녀가 모두 사망한 만 60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를 지칭한다.   제8장 보장조치   1. 납세자가 수금업체에 영수증(發票)·재정영수증(財政票據)·지출증빙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수금업체는 발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특별부가공제 혜택을 최초로 누리는 납세자는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적시에 관련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그가 제출하는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온전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별부가공제 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적시에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 항에서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라 함은 납세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 피봉양인 등의 개인적인 신분 정보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규정한 특별부가공제와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검사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자료는 최소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유관부서·기관은 특별부가공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고 세무기관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데 협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2. 공안부서의 호적인구 관련 기본정보, 가구 구성원 관계 정보, 출입국증서 정보, 출국자 관련 정보, 호적인구 사망표시 등 정보; 3. 위생건강부서의 출생 관련 의학증명 정보, 외자녀 정보; 4. 민정부서·외교부서·법원의 혼인상태 관련 정보; 5. 교육부서의 학생 학적 관련 정보(학력 계속교육 학생 학적, 수험자격 정보), 관련 부서에 비안(備案)한 해외 교육기구 자격 정보; 6.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 등 부서의 기능공교육학교 학생 학적 정보, 기능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정보, 전문기술인력 직업자격 계속교육 정보; 7. 주택도농건설부서의 주택(공공임대주택 포함) 임대 관련 정보, 주택공적금관리기구의 주택공적금대출 상환 지출 관련 정보; 8. 자연자원부서의 부동산 등기 정보; 9. 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부서의 주택자금상업대출 상환 지출 관련 정보; 10. 의료보장부서의 의료보장 정보 시스템에 기록된 의약비 개인 부담 정보; 11.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확정한 기타 세금 관련 정보.   상기 데이터·정보의 형태, 표준, 공유방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 및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列市) 세무국이 유관부서와 상의하여 확정한다.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유관부서·기관이 소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정보를 세무기관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 또는 기관의 주요책임자와 관계자가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가 실제상황과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상황을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세무기관이 특별부가공제 상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납세자의 임직업체·고용업체 소재지, 실거주지, 호적소재지의 공안파출소,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은 세무기관의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1. 이 방법에서 부모라 함은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자녀라 함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계자녀, 양자녀를 포함한다. 부모 이외의 미성년자 후견인은 이 방법의 규정에 맞추어 집행한다. 2.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한도액을 한 납세연도에 모두 공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3.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4. 이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务院关于印发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的通知**  国发〔2018〕41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现将《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国务院  2018年12月13日  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暂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以下简称个人所得税法）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是指个人所得税法规定的子女教育、继续教育、大病医疗、住房贷款利息或者住房租金、赡养老人等6项专项附加扣除。  第三条　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遵循公平合理、利于民生、简便易行的原则。  第四条　根据教育、医疗、住房、养老等民生支出变化情况，适时调整专项附加扣除范围和标准。  第二章　子女教育  第五条　纳税人的子女接受全日制学历教育的相关支出，按照每个子女每月1000元的标准定额扣除。  学历教育包括义务教育（小学、初中教育）、高中阶段教育（普通高中、中等职业、技工教育)、高等教育（大学专科、大学本科、硕士研究生、博士研究生教育）。  年满3岁至小学入学前处于学前教育阶段的子女，按本条第一款规定执行。  第六条　父母可以选择由其中一方按扣除标准的100%扣除，也可以选择由双方分别按扣除标准的50%扣除，具体扣除方式在一个纳税年度内不能变更。  第七条　纳税人子女在中国境外接受教育的，纳税人应当留存境外学校录取通知书、留学签证等相关教育的证明资料备查。  第三章　继续教育  第八条　纳税人在中国境内接受学历（学位）继续教育的支出，在学历（学位）教育期间按照每月400元定额扣除。同一学历（学位）继续教育的扣除期限不能超过48个月。纳税人接受技能人员职业资格继续教育、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继续教育的支出，在取得相关证书的当年，按照3600元定额扣除。  第九条　个人接受本科及以下学历（学位）继续教育，符合本办法规定扣除条件的，可以选择由其父母扣除，也可以选择由本人扣除。  第十条　纳税人接受技能人员职业资格继续教育、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继续教育的，应当留存相关证书等资料备查。  第四章　大病医疗  第十一条　在一个纳税年度内，纳税人发生的与基本医保相关的医药费用支出，扣除医保报销后个人负担（指医保目录范围内的自付部分）累计超过15000元的部分，由纳税人在办理年度汇算清缴时，在80000元限额内据实扣除。  第十二条　纳税人发生的医药费用支出可以选择由本人或者其配偶扣除；未成年子女发生的医药费用支出可以选择由其父母一方扣除。  纳税人及其配偶、未成年子女发生的医药费用支出，按本办法第十一条规定分别计算扣除额。  第十三条　纳税人应当留存医药服务收费及医保报销相关票据原件（或者复印件）等资料备查。医疗保障部门应当向患者提供在医疗保障信息系统记录的本人年度医药费用信息查询服务。  第五章　住房贷款利息  第十四条　纳税人本人或者配偶单独或者共同使用商业银行或者住房公积金个人住房贷款为本人或者其配偶购买中国境内住房，发生的首套住房贷款利息支出，在实际发生贷款利息的年度，按照每月1000元的标准定额扣除，扣除期限最长不超过240个月。纳税人只能享受一次首套住房贷款的利息扣除。  本办法所称首套住房贷款是指购买住房享受首套住房贷款利率的住房贷款。  第十五条　经夫妻双方约定，可以选择由其中一方扣除，具体扣除方式在一个纳税年度内不能变更。  夫妻双方婚前分别购买住房发生的首套住房贷款，其贷款利息支出，婚后可以选择其中一套购买的住房，由购买方按扣除标准的100%扣除，也可以由夫妻双方对各自购买的住房分别按扣除标准的50%扣除，具体扣除方式在一个纳税年度内不能变更。  第十六条　纳税人应当留存住房贷款合同、贷款还款支出凭证备查。  第六章　住房租金  第十七条　纳税人在主要工作城市没有自有住房而发生的住房租金支出，可以按照以下标准定额扣除：  （一）直辖市、省会（首府）城市、计划单列市以及国务院确定的其他城市，扣除标准为每月1500元；  （二）除第一项所列城市以外，市辖区户籍人口超过100万的城市，扣除标准为每月1100元；市辖区户籍人口不超过100万的城市，扣除标准为每月800元。  纳税人的配偶在纳税人的主要工作城市有自有住房的，视同纳税人在主要工作城市有自有住房。  市辖区户籍人口，以国家统计局公布的数据为准。  第十八条　本办法所称主要工作城市是指纳税人任职受雇的直辖市、计划单列市、副省级城市、地级市（地区、州、盟）全部行政区域范围；纳税人无任职受雇单位的，为受理其综合所得汇算清缴的税务机关所在城市。  夫妻双方主要工作城市相同的，只能由一方扣除住房租金支出。  第十九条　住房租金支出由签订租赁住房合同的承租人扣除。  第二十条　纳税人及其配偶在一个纳税年度内不能同时分别享受住房贷款利息和住房租金专项附加扣除。  第二十一条　纳税人应当留存住房租赁合同、协议等有关资料备查。  第七章　赡养老人  第二十二条　纳税人赡养一位及以上被赡养人的赡养支出，统一按照以下标准定额扣除：  （一）纳税人为独生子女的，按照每月2000元的标准定额扣除；  （二）纳税人为非独生子女的，由其与兄弟姐妹分摊每月2000元的扣除额度，每人分摊的额度不能超过每月1000元。可以由赡养人均摊或者约定分摊，也可以由被赡养人指定分摊。约定或者指定分摊的须签订书面分摊协议，指定分摊优先于约定分摊。具体分摊方式和额度在一个纳税年度内不能变更。  第二十三条　本办法所称被赡养人是指年满60岁的父母，以及子女均已去世的年满60岁的祖父母、外祖父母。  第八章　保障措施  第二十四条　纳税人向收款单位索取发票、财政票据、支出凭证，收款单位不能拒绝提供。  第二十五条　纳税人首次享受专项附加扣除，应当将专项附加扣除相关信息提交扣缴义务人或者税务机关，扣缴义务人应当及时将相关信息报送税务机关，纳税人对所提交信息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专项附加扣除信息发生变化的，纳税人应当及时向扣缴义务人或者税务机关提供相关信息。  前款所称专项附加扣除相关信息，包括纳税人本人、配偶、子女、被赡养人等个人身份信息，以及国务院税务主管部门规定的其他与专项附加扣除相关的信息。  本办法规定纳税人需要留存备查的相关资料应当留存五年。  第二十六条　有关部门和单位有责任和义务向税务部门提供或者协助核实以下与专项附加扣除有关的信息：  （一）公安部门有关户籍人口基本信息、户成员关系信息、出入境证件信息、相关出国人员信息、户籍人口死亡标识等信息；  （二）卫生健康部门有关出生医学证明信息、独生子女信息；  （三）民政部门、外交部门、法院有关婚姻状况信息；  （四）教育部门有关学生学籍信息（包括学历继续教育学生学籍、考籍信息）、在相关部门备案的境外教育机构资质信息；  （五）人力资源社会保障等部门有关技工院校学生学籍信息、技能人员职业资格继续教育信息、专业技术人员职业资格继续教育信息；  （六）住房城乡建设部门有关房屋（含公租房）租赁信息、住房公积金管理机构有关住房公积金贷款还款支出信息；  （七）自然资源部门有关不动产登记信息；  （八）人民银行、金融监督管理部门有关住房商业贷款还款支出信息；  （九）医疗保障部门有关在医疗保障信息系统记录的个人负担的医药费用信息；  （十）国务院税务主管部门确定需要提供的其他涉税信息。  上述数据信息的格式、标准、共享方式，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及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税务局商有关部门确定。  有关部门和单位拥有专项附加扣除涉税信息，但未按规定要求向税务部门提供的，拥有涉税信息的部门或者单位的主要负责人及相关人员承担相应责任。  第二十七条　扣缴义务人发现纳税人提供的信息与实际情况不符的，可以要求纳税人修改。纳税人拒绝修改的，扣缴义务人应当报告税务机关，税务机关应当及时处理。  第二十八条　税务机关核查专项附加扣除情况时，纳税人任职受雇单位所在地、经常居住地、户籍所在地的公安派出所、居民委员会或者村民委员会等有关单位和个人应当协助核查。  第九章　附　则  第二十九条　本办法所称父母，是指生父母、继父母、养父母。本办法所称子女，是指婚生子女、非婚生子女、继子女、养子女。父母之外的其他人担任未成年人的监护人的，比照本办法规定执行。  第三十条　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额一个纳税年度扣除不完的，不能结转以后年度扣除。  第三十一条　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具体操作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另行制定。  第三十二条　本办法自2019年1月1日起施行。 |